

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

의안 번호	1/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'95. 9.
제출자 제천시장

I. 제정이유

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 제공 및 수탁업무 처리시 제공받는 기관 (또는 개인) 및 위탁자로부터 징수할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II. 주요골자

1. 제천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기준 규정

가.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기계사용료, 인건비, 전산자료입력료, 소모품비, 제작비, 여비등을 산정하여 징수한다. (안 제3조)

나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(안 제5조)

- ① 주전산기에 의하여 처리된 결과를 시산하기관에서 직접활용 할수 있는 경우
- ② 주전산기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
- ③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III. 제정근거

○ 내무부 시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준칙

제천시전자계산조작사용료징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천시의 전자계산조작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전자계산조작"(이하 "컴퓨터"라 한다.)이라 함은 입력, 제어, 기억,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·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.
2. "관련기기"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·출력장치, 보조기억장치,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.

제3조(징수기준)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.

제4조(징수방법) 사용료의 징수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.

1. 주전산기에 의하여 처리된 결과를 시산하기관에서 직접활용 할 수 있는 경우
2. 주전산기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
3.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용료징수기준

구 분		산 정 기 준
기계사용료	임 대	월당금액 X CPU 시간 ÷ 월평균 CPU사용시간
	구 매	구매가격 ÷ 5년 ÷ 12개월 X CPU시간 ÷ 월평균 CPU사용시간
인 건 비		6급 4호 월평균보수 ÷ 30 X 작업일수
전 산 자 료 입 력 료 (1타당)		기능직공무원 10등급 5호 월평균 보수 ÷ 30일 ÷ 80,000 타
소 모 품 비		실비
제 잡 비		위 전체금액의 10%
여 비 기 타		실비

주 : ○ 월평균 CPU사용시간 = 전산기보유 시군의 전년도 월평균 CPU시간의 평균 (평균시간은 도에서 책정시달)

○ 월평균보수 = 봉급 + 장기근속수당 + 전산수당 + 기말수당월평균액
+ 정근수당월평균액 + 직무수당

○ 인건비 및 전산자료 입력료

일반직 6급 4호 -----> 6급 4호 (근속년수 10년기준)

기능직 10등급 5호 -----> 10등급 5호 (근속연수 5년기준)

○ 기계사용료

· 임대계약만료후 소유권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「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」으로 함.

○ CPU(중앙처리장치) : 컴퓨터에서 각종제어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부품.